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20

2009.09.01.제정	2011.12.01.개정	2012.08.17.개정	2013.05.22.개정	2016.09.01.개정
2017.03.01.개정	2017.09.01.개정	2018.01.31.개정	2018.02.28.개정	2019.07.16.개정
2020.02.12.개정	2020.03.03.개정	2020.07.03.개정	2020.07.14.개정	2020.09.25.개정
2020.12.17.개정	2022.02.28.개정	2022.04.15.개정	2022.08.30.개정	

소관부서: 교무처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화신학원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부산경상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1., 2019.07.16.>

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02.28.,2019.07.16.>

- ②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한다. <개정 2012.08.17.,2019.07.16.>
- ③ <항 삭제 2016.09.01.>
- ④ 삭제 <2018.02.28.>
- ⑤ 전임교원은 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강의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및 외국인교원으로 한다. <신설 2019.07.1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 외국인교원, 강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2.28., 2019.07.16., 2020.03.03.>

제4조(임용권자) ①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전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01.31., 2020.03.03. 2022.02.28., 2022.08.30.>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3.03.>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학교법인 화신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2/20

- **제6조(겸직 및 교외활동의 제한)** ① 전임교원은 본 대학 이외의 타 기관에 속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9.07.16.>
  - ② 다만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타 기관에 촉탁 또는 위촉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전임교원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교외활동 또는 교외의 개인이나 단체와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07.16.> 단, 교육공무원법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단, 강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7.16.>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전임교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7.16.>
- 제7조(전임교원의 정년) ①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단, 총장은 학교법인 화신학원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 ②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 ③ 정년에 도달한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9.07.16.>
- 제8조(명예퇴직) ①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전임교원정원의 조정) 총장은 계열(학과)별, 직급별 인원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율과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조항 제목 개정 2020.03.03.>
-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면, 승진, 정년보장 임용심의 및 교원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업적평가) ①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재임용·재계약·성과급 지급 등 교원인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07.16.>
  - ②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임용절차)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8.01.31., 2018.02.28., 2020.03.03. 2022.02.28., 2022.08.30.>
- **제13조(급여)** ① 급여는 본 대학 전임교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연봉으로 계약한다.<개정 2019.07.16., 2020.03.03.>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3/20

- ② 연봉으로 계약 시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한다.
- ③ 연봉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 전임교원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0 03.03.>

#### 제 2 장 계 약

- 제14조(계약) ① 본 대학 전임교원의 임용은 임용권자와 당해 본인과의 계약으로 결정하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03.>
  - ② <항 삭제 2016.09.01.>
  - ③ 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 또는 계약이 갱신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0.03.03.>
  - ④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⑤ 공무로 국외 파견 또는 국외 출장 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재계약 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⑦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재계약 여부의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당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전임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3.>
  -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3.>
  - 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전임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임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3.>
- 제16조(임용계약의 심사) ① 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된 입시활동, 교육 및 연구활동, 취업 및 산학활동, 정성평가영역 업적 평점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20.03.03.>
  - ② 교원인사위원회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4/20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희망하는 전임교원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03.03.>

- 1.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20.03.03.>
- 3. 대학 기여도에 관한 사항
- 4.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5. 기타 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재임용이 거부된 전임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3.03.>
- 제17조(임용시기) 전임교원은 임명장, 계약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3.03.>

#### 제 3 장 신규임용

**제18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표 개정 2012.08.17..2019.07.16.>

		대학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	전문대학졸업	및 동등이상의	의 학력자
직	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합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합계
교	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 3	교 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 3	교 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강	사	1년	1년	2년	1년	2년	3년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 할 수 있다.
- ②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 ③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1종류만 인정한다.
- ④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 1.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5/20

- 2. 산업체에서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⑤ 제3항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및 산업체에서 담당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은 별표 2에 의하여 환산한다.
- 제19조(신규임용) ① 신규 임용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
- ②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8.17., 2020.03.03.>
  - ③ 신규임용방법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교수 등 특별초빙) 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신규임용의 제한) ① 전임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 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학생모집단위별로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교원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신규 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03.03.>
  -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하다.
- 제21조(신규임용 절차) ①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3.03.>
  -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 3. 교원채용심의 : 기초·전공심사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기초 ·전공심사조서를 통해 심의, 면접대상자 선정
  - 4. 면접심사 : 교원채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및 교수로 서의 자질과 능력 등의 심사
  - 5. 기타심사 : 교원채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테스트, 강의심사 등의 평가를 신규 임용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6. 교원인사위원회 종합심의 : 기초·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합산, 산술 평균하여 최고 득점자를 최종임용 예정자로 총장 에게 추천한다.
  - ② 제1항의 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 대학 소속 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6/20

- 제22조(심사결과공개)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 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 며, 공개내용에는 심사단계별 심사점수, 판정, 심사위원별 채점점수를 공개한다.
  - ②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23조(연구실적물의 인정)**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개정 2017.03.01., 2020.03.03.>

#### 제 4 장 승진임용

- **제24조(승진임용의 시기)** 전임교원의 정기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에 시행한다. 단, 정기 승진임용과 별도로 특별 승진임용을 시행할 수 있다. <조 개정 2020.02.12., 2020.03.03., 2020.12.17.>
- 제24조의2(승진임용 절차) ①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예정일 전까지 본 규정의 [별지 제3호 서식]교원 승진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승진임용 대상임을 통보하고 승진 임용을 신청한다.<항 개정 2020.09.25., 2022.04.15.>
  - ②승진임용 대상자는 교수승진 시를 제외하고 승진예정일 전까지 교원인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승진심사 자기평가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항 개정 2020.07.14., 2022.04.15.>
  - ③교무처장은 승진임용 대상자의 심사대상 기간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교수업적평가결과표를 통하여 평균평점을 확인한 후 이 결과표와 교원 승진임용 신청서, 승진심사자기평가서를 함께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항 개정 2020.09.25.>
  - ④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예정일 전까지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수승진대상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 동의 여부만 결정한다. <항 개정 2020.12.17., 2022.04.15., 2022.08.30.>
  - ⑤승진임용 대상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02.12.>
  - ⑥ 특별 승진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항 신설 2020.12.17.>
- 제24조의3(숭진임용 재심사) ①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진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승진임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심사 대상자는 승진임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승진임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교원인사위원장은 소명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근거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7/20

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0.02.12.>

**제25조(승진소요 연수)** ①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표 개정 2012.08.17., 2020.02.12.>

현 직위	승진되는 직위	승진소요 연수
부 교 수	교 수	6년
조 교 수	부교수	6년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미 취득자는 1년간 소요 연수가 연장된다. <개정 2017.09.0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학문적 업적(강의평가, 학생진로, 지도 우수 등) 또는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09.01.><개정 2020.07.03.>
- ④ 해외 연구기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및 타 대학에서의 연수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17.09.01.>
- ⑤ 승진 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타 대학에서의 동일 직급이상의 재직연수는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17.09.01.>
- ⑥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 번호 변경 2017.09.01.>

제26조(충진임용 요건) ① 전임교원은 승진임용에 있어서 제25조에 규정한 승진소요 연수 이외에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해 평가된 업적이 다음의 직위별 평균평점과 산업체현장연수 및 연구실적물, 지도학생 취업률, 학과별 입시율을 충족한 자로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자기평가서와 인터뷰 등을 심사하여 행한다.<개정 및 표 개정 2012.08.17.><표 개정 2017.03.01., 2017.03.01.><개정 2018.02.28., 2020.02.12., 2020.03.03.><표 개정 2020.02.12.>

현 직위	승 진	승 진	심사대상	산업체	평균평점	연구실적	지도학생	학과별
현 직위	되는직위	소요연수	기 간	현장연수	정신생심	실적	취업률	입시율
부교수	교 수	6년	최근 6년	최근 6년 (14일 이상)	700점	기간합산	평균	평균
조교수	부교수	6년	최근 6년	최근 6년 (14일 이상)	700점	400%	60%	91%

- ② 제1항의 승진직위별 평균평점은 심사 대상기간 중에 보유한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누적된 평균점수로 한다.
- ③ 심사대상기간의 연구실적은 별표1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도학생 취업률과 학과별 입시율은 업적평가(년별) 합산 기준의 정량적 수치로 평가한다. <개정 2017.03.01., 2020.02.12.>
- ④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에는 박사학위취득자(전공전환교육이수자는 석사학위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미 취득자에 대해서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8/20

는 현저한 학문적 업적과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면 그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2012.08.17.>

- ⑤ 위 4항의 규정에 의해 교수로 승진 시 에는 이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장교 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⑥ 승진심사 시 교수승진 시를 제외하고는 심사 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승진심사 자 기평가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 인사위원회의 인터뷰(교수승진 포함)에 응해야 한다.
- ① 보직으로 연구업적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누적된 평균점수가 없을 경우 평균평점 점수는 통과된 것으로 인정한다.
- 제27조(숭진임용의 유보) 이 규정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전임교원이라도 전임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을 유보한다. <개정 2020.03.03.>
  -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2.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가. 정직 18개월 <개정 2020.02.12.>
    - 나. 감봉 12개월
    - 다. 견책 6개월
  - 4.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과 관련 행정상의 처분(시말서)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자기평가서' 및 인터뷰 심사결과와 대학발전 에 대한 기여도 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개정 2020.02.12.>
- 제28조(직위별 비율) 승진임용 시 전임교원의 직위별 인원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위별 인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3.>

### 제 5 장 재임용

- **제29조(재임용 시기)**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연2회 시행한다. <개정 2020.03.03.>
- 제30조(재임용 심사) ① 제12조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동안의 학생교육·학문연구·산학협동·수범업적 및 대학발전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교수업적평가 점수 및 재임용 심사 평정에 따라 평가하여 재임용 한다. <개정 2020.03.03.>
  - ② 재임용 대상 전임교원에게는 "교원 재임용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03.>
  - ③ 재임용 심사 평정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④ 무급휴식년 2회 적용 전임교원은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항 신설 2016.09.01.,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9/20

2020.03.03.>

제31조(재임용 요건 및 제한) 삭제 <2016.09.01.>

#### 제 6 장 정년보장 임용

**제32조(정년보장임용 대상)**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03.03.>

- 1.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호 개정 2016.09.01.>
- 2. 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예정인 자
- 제33조(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 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3.03.>
  - ② 정년보장 임용의 심사기준은 정년보장교원 심사규정에 의한다.
- 제34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3.03.>
  -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 7 장 휴직 · 복직 및 상벌

- **제35조(휴직·면직 및 복직)** 전임교원의 휴직·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3.03.>
- 제36조(표창) 본 대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임교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표창의 수여에 관하여는 본 대학 "공적심사위원회 및 포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3.03.>
- **제37조(징계)** 전임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 정 2020.03.03.>
- **제38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교육부 지침을 준용한다.

### 제 8 장 교원 행동기준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0/20

**제39조(갑질 및 행동강령)** 전임교원의 갑질 및 행동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신설 2020.02.12., 2020.03.0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2항(전임강사 삭제)은 시행일을 2012년 7월 21일로 하고, 제2조 제4항(산학협력중점교원 추가)의 시행일은 2012년 2월 10일로 한다.
  - 가. 제18조(교원의 자격)의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신규임용계약 되는 교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나. 제26조(승진임용 요건) 제2항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하다.
  - 다. 제31조(재임용 요건 및 제한) 제1항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라. 교수업적평가의 누적 평균평점은 2012년 4월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학생산학취업처』를『산학처』로,『기획처』를『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2/2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3/20

# [별표 1]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 <표 개정 2017.03.01., 2020.02.12.>

	구 분	인 정 기	준	인정률(%)	<b>টা</b> ত্র
		국내・외 저명학술기	(1)	200	
		국제 전문학술지 <sup>(2)</sup>		150	
	논문 1)	국내 전문학술지 <sup>(3)</sup>		100	
		대학 논문집		100	
		기타 논문집 <sup>(4)</sup>		50	
		박사학위취득논문		200	
		석사학위취득논문		100	
		국제 전문학술서 <sup>(5)</sup>		200	
		국내 전문학술서 (6)		150	
	저서 <sup>2)</sup>	번역서 <sup>(7)</sup>		100	국내 출판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 출판사에 출간한 경우 인정률의 50% 가산
		대학교재 <sup>(8)</sup>		100	본 대학 교원으로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한 대학교재를 출간한 경우 인정률의 50% 가산
		학술교양서적 <sup>(9)</sup>		50	
	Proceeding	국제학술회의 발표 <sup>(10)</sup>		50	
	3)	전국학술회의 발표	(11)	30	
	연구보고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50	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보고서인 경우
	특허 <sup>4)</sup>	특허		100	그레시되어 이기를이 500/ 키기
	특어 "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5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상위자격 취득	기술사 이상 (1건)		100	
연	연수	교육부·학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공인된 연수		100	소정의 시간 (120시간 이상, 실무내용 비율이 60% 이상)
구	과견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파견근무		100	6 ~ 12개월 이내
•				50	3 ~ 6개월 이내
실	<u> </u>	공인된 국제전,	특선이상	200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이상	150	
적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추천작가 및 출품	100	
			특선이상	150	
		특별시 · 광역시 ·	입선이상	100	
		도의 공모전	초대·추천작가 및 출품	50	
		개인전		100	
		2인 공동전		5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공인된 단체 및 기된 기획초대전	<b>관</b> 의	30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 문화재단 등에 의한 기획초대전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전문 화랑규모의 기	<u></u> 획추대전	2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공인된 단체전 출품		30	문예진흥원, 미협 등에 등록된 단체의 단체전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일반 단체전 출품(심사위원)		20	국제실적은 인정률의 50% 가산
		공인된 체육단체의 개인연구 발표회		100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출전		100	
		국제공인 경기 입상		100	
		전국규모 국내경기 입상		100	
		체육관계 훈장		100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100	50시간 이상
		국제공인 심판자격		100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4/20

- 1. 공동연구실적물은 다음의 환산율에 따라 인정한다.
  - 1) 1인 연구: 100%
  - 2) 2인 공동 연구: 50%
  - 3) 3인 이상 공동 연구: 30%
- 2. Proceeding으로 평가받은 후 논문으로 제출할 경우 논문 적용기준에서 Proceeding 적용기준을 차감 한다.
- 3. 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 (1) 국내 · 외 저명학술지

국내·외의 저명학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논문 게재당시에 SCI (Science Citation Index),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2) 국제 전문학술지
  - ① 국내 SCI(IF 1.0 이하) 또는 확장 SCI, sc SSCI에 등재된 학술지
  - ② 논문 게재 당시에 SCI, SSCI 또는 AHCI 중 어느 색인에도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로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국의 전문학술단체에서 영어, 일어, 독어, 불어 및 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간행된 학술논문지
- (3) 국내 전문학술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전국규모 이상으로 평가받거나 등재후보 이상으로 평가된 학술지 단,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작업이 1차 완료되는 2002년까지는 학술지 간행 연수가 3년 이상이며, 회원수가 인문·사회계열은 100명 이상, 자연·이공계열은 200명 이상이고, 회원이 5개 광역시이상(타 지역 50% 이상) 분포하는 학술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를 한시적으로 전국규모 학술지로 인정한다.

- (4) 기타 논문집
  - (1), (2), (3)항의 학술지를 제외한 모든 논문집, 학술지 등. 단,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30%만 인정함.
- 2) 저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의 연구저작물로 국내·외에 배포할 목적으로 저술한 것을 말한다. 단, 논문 모음집은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국제 전문학술서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저자의 독창적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외국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 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6) 국내 전문학술서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저자의 독창적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국내의 전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전 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7) 번역서

외국의 전공관련 학술서를 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5/20

#### (8) 대학교재

대학의 강의를 위하여 출판한 전공입문서, 개론서, 원론서, 각론서를 말한다. 단, 실험실습지침서, 수험서, 문제집 등은 제외한다.

(9) 학술교양서적

일반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공에 관련된 교양서적을 말한다.

#### 3) Proceeding

논문으로서의 체제와 형식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학술회의의 논문집에 게재된 것을 말한다.

(10) 국제학술회의

국내·외의 저명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로, 4개국(국내 개최시 5개국) 이상의 발표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적인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를 말한다.

(11) 전국학술회의

국내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저명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 4) 특허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그 특허권이 결정된 것으로, 그 특허의 특허권자나 발명자(또는 고안 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4. <신설 2017.03.01.> 삭제 <2020.02.12.>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6/20

[별표2] <개정 2012.08.17., 2013.05.22., 2020.02.1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NO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 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 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인정범위 100%
1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 박사과정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00%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05.22>	인정범위 30%-70% (100%까지 가능)
6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개정 2013.05.22>	70%
7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주당 5시간 이하, 주당 5시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 가산, 100%까지 인 정)<개정 2013.05.22>	50% - 100%
8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9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개정 2013.05.22>	70%
10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개 정 2013.05.22>	70%
11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개정 2013.05.22>	70%
12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석사학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100%)<개정 2013.05.22>	70%
13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대학, 전문대학의 체육코치	70%
14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15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	인정범위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7/20

	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개 정 2013.05.22>	70%-100%
16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 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17	<삭제 2012.8.17.>	70%
18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 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19	< 삭제 2019.12.10. >	
20	< 삭제 2019.12.10.>	
21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2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건축사의 개업기간 <개정 2013.05.22>	100%
23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항공법』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추가 2012.8.17.>.<개정 2013.05.22>	100%
24	『국가기술자격법』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 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00%
2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05.22>	100%
26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개정 2013.05.22>	100%
27	국가, 공공단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00%
2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 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개정 2013.05.22>	100%
29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추가 2012.8.17.>.<개정 2013.05.22>	100%
30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개정 2013.05.22>	100%
31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개정 2013.05.22>	100%
32	민간 산업체(교육기관 포함)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개정 2019.12.10., 2020.02.12.>	100%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8/20

#### [별지 1호]

	승진심사 자기	평가서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6항)
소속계열(학과):	직	위:	성명:	
대상기간:				

- 1. 교육활동
- -강의
- -학생지도
- -취업지도
- 2. 연구 및 산학협력
- -연구활동
- -산학협력 및 교류활동
- 3. 우수학생 유치 및 홍보활동
- -고교방문 홍보활동
- -입학설명회 참여 및 유치활동
- -산업체 위탁생 유치활동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유치활동
- -기타 홍보활동
- 4. 품위유지 및 대인관계
- -품위유지
- -자기계발
- -학과 내 인화관계
- 5. 봉사활동
-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 -기타 교내 및 대외활동
-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항
- -기타사항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1. 영역별로 페이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적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제출기한: 심사 30일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9/20

[별지 2호] <개정 2020.03.03.>

# 승진심사 자기평가 및 인터뷰 평정서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ਰ:			
	성 명	소속:	직위:		성	 명:		
심사대상자	기 간	년	월	일 부터	<u></u> 년	월	일 까지	
	관련규정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6항				
		심사내	용 및	기준				
영 역 별	세부영역				평가	(해당란여	에 0표)	
33 학 별	제구영학		매우	9월등	월등	보통	조금미흡	미흡
	1)강의							
1. 교육활동	2)학생지도							
	3)연구활동							
2. 산학협력	1)취업지도							
및 교류활동	2)산학협력활동							
	1)고교방문 홍보활							
0 0 1 1 2 1	2)입학설명회 참여							
3. 입시활동	3)산업체 위탁생		15					
	4)학사학위 전공심호 5)기타 홍보활동	와라성 약생 규지됩	12					
	1)품위유지							
4. 품위유지	2)자기계발							
및 대인관계	3)학과(계열)내 인	]화관계						
						•	•	
5. 인터뷰 결								
과에 대한								
의견								
종합의견								
		년	월	일				
		2] 2] 6] 6]			الم			
	,	심사위원			인			



문서번호	BSKS-3-1-02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20/20

[별지 3호] <신설 2020.02.12.>

# 교원 승진임용 신청서

#### 1. 임용신청구분

임용구분 승진임용 <b>정년보장임용</b> 신청여부	신청 (	)	미 신청 (	)	
------------------------------	------	---	--------	---	--

# 2.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인)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승진신청직급	승진임용예정일	비고

20 . . .

신 청 자 : (인)